

제326회 임시회
2014.01.24.(금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교육위원회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4.01.24.(금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일자: 2014년 01월 08일

다. 회부일자: 2014년 01월 09일

라. 상정일자: 2014년 01월 21일

(제3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행정관리국장 박노화)

가. 제안이유

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 2014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
인원 증원분과 정책수요를 반영한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
기관별·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,137명으로 22명 증원(안 제2조)
- 2)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 개정(안 제4조, 별표3)

구 분	정원 변경사항			비고
	개정전	개정후	증감	
정무직공무원	1	1	0	교육감
일반직공무원	2,890	2,893	3	
연구직공무원	7	12	5	연구사
교육전문직원	217	231	14	
총 계	3,115	3,137	22	

- 3) 전문경력관의 “직무군”을 “직위군”으로 수정(안 제4조)
- 4) 하급교육행정기관 명칭을 “지역교육청”에서 “교육지원청”으로 수정(안 제2조, 별표3, 별표4)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: 정대회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 2014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원분과 정책수요를 반영한 정원 조정 및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에 따른 용어 수정,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13.12.30.)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중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한 6명의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정책수요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,

- 전문경력관의 “직무군”을 “직위군”으로,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“지역교육청”에서 “교육지원청”으로 수정한 것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- 5. 토론요지: “생략”
- 6. 심사결과: “원안가결”
- 7. 소수의견요지: “없음”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- 9. 첨부서류: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3,115명”을 “3,137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, “지역교육청 소속기관”을 “교육지원청 소속기관”으로, “2,891명”을 “2,899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, “지역교육청 소속기관”을 “교육지원청 소속기관”으로, “217명”을 “231명”으로 한다.

제4조 단서 중 “직급별 정원(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)”을 “직급별 정원(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)”으로 한다.

별표 3과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육지원청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“지역교육청”을 인용한 경우에는 “교육지원청”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[별표 3]

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도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	공립 각급 학교
총계	3,137	-			
정무직 계	1		1		
교육감	1		1		
일반직 계	2,893	-			
3급	1		1		
3·4급	4		4		
4급	19	1	17	1	
5급이하 소계	2,856	-			
전문경력관 소계	13	-			
연구직 계	12	-			
연구사 소계	12	-			
교육전문직원 계	231	-		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원	31		19	12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원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200	-			

[별표 4]

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표(제5조 관련)

단위기관	종류	직렬	직급	정원	존속기한	비고
본청	일반직	행정	4급	1	2015.2.28.	방과후학교지원단
				1		
		교육행정	5급	1	2015.8.31.	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
			6급	1		
		7급	1			
교육지원청	일반직	교육행정	8급	17	2016.6.30.	위 프로젝트(Wee Project) 사업 전문상담사
합계				22		

현 행						개 정 안					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도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지역교육청 (소속기관 포함)	공립 각급학교	기관별 직급별	총계	도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	공립 각급학교		
4급	19	1	17	1		4급	19	1	17	1			
5급이하 소계	2,853		-			5급이하 소계	2,856		-				
전문경력관 계	13		-			전문경력관 계	13		-				
연구직 계	7		-			연구직 계	12		-				
연구사 소계	7		-			연구사 소계	12		-				
교육전문직원 계	217		-			교육전문직원 계	231		-			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31		19	12		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31		19	12		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186		-			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200		-				
[별표 4] 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표(제5조 관련)						[별표 4] 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표(제5조 관련)							
단위기관	종류	직렬	직급	정원	존속기한	비고	단위기관	종류	직렬	직급	정원	존속기한	비고
본청	일반직	행정	4급	1	2015.2.28.	방과후학교지원단	본청	일반직	행정	4급	1	2015.2.28.	방과후학교지원단
			5급	1						2015.8.31.	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		
		교육행정	6급	1	2015.8.31.	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							
			7급	1					2016.6.30.	위 프로젝트(Wee Project) 사업 전문상담사			
지역교육청	일반직	교육행정	8급	17	2016.6.30.	지역교육청	일반직	교육행정			8급	17	2016.6.30.
합계							합계						

관 계 법 령 발 체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3.12.12.] [대통령령 제24889호, 2013.12.4.]

제15조(정원의 관리)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

지방공무원의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그 조사·확인 결과를 기관별·기구별·종류별·직렬별·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·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
2.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3.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
제20조(정원의 규정) ① 시·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 정원
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
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

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·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및 교육전문직원 중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

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④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전문경력관 규정

[시행 2014.1.1.] [대통령령 제25040호, 2013.12.30.]

제4조(직위군 구분) ① 제3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직위(이하 "지방전문경력관 직위"라 한다)의 군(이하 "직위군"이라 한다)은 직무의 특성·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,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직위군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하여야 한다.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3.12.30.] [법률 제12128호, 2013.12.30.]

제34조(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) ①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·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.

②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,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2014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및 정책수요 증원분 반영
- 관련: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-4713(2013.10.18.)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지방공무원 22명(일반 지방공무원 8명, 교육전문직원 14명) 인건비

3. 관련조문

-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0조

제20조(정원의 규정) ① 시·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 정원
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 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
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

② ~ ④ 생략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: 2014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산정 단가 적용

나. 추계 결과 (단위: 천원)

연간 인건비 추계		연도별 인건비 추계				
산출기초	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	합계
1. 정규직인건비	1,808,374	1,506,979	1,862,626	1,918,506	1,976,062	7,264,173
가. 일반지방공무원 57,198,000원× 8명=	457,584	381,320	471,312	485,452	500,016	1,838,100
나. 교육전문직원 96,485,000원×14명=	1,350,790	1,125,659	1,391,314	1,433,054	1,476,046	5,426,073

※ 2015년 이후 인건비는 처우개선분 3%를 적용하였으며 2014년은 10개월분만 추계

다. 재원조달방안: 보통교부금

※ 일반 지방공무원 8명, 교육전문직원 8명은 2014년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인원에 포함

5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6. 작성자 : 행정관리국 행정과장 김왕년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4년)	2차년도 (2015년)	3차년도 (2016년)	4차년도 (2017년)	계
세 입		1,506,979	1,862,626	1,918,506	1,976,062	7,264,173
보통교부금		1,506,979	1,862,626	1,918,506	1,976,062	7,264,173
세 출		1,506,979	1,862,626	1,918,506	1,976,062	7,264,173
정규직인건비		1,506,979	1,862,626	1,918,506	1,976,062	7,264,173
재원 조달		1,506,979	1,862,626	1,918,506	1,976,062	7,264,173
의존 재원	소 계	1,506,979	1,862,626	1,918,506	1,976,062	7,264,173
	국고보조금					
	보통교부금	1,506,979	1,862,626	1,918,506	1,976,062	7,264,173
	특별교부금					0
자체 수입	소 계					0
	자체수입					0
지방채						0
기 금						0
기타(차입금, 민자 예비비 등)						0